

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외국인 투자”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.
2. “외국인 투자 기업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.
3. “외국인 투자 지역”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.
4. “전략산업”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투자유치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과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화순군의회 의원
2.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
3. 투자유치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·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
4. 기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

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·면장은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도시경제과 투자진흥담당이 된다.

제4조(협의회의 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
2. 국내·외국인투자의 유치·홍보 및 지원계획
3.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
6.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
7. 기타 군수가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
하는 사항

②협의회는 전년도 투자효과 분석 및 계속 투자여부, 투자계획의 변경,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.

제5조(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“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투자유치 자문관) ①군수는 국내·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화순군 투자유치 자문관(이하 “자문관”이라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내·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) 내·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한다.

제8조(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)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등에 대하여는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국내·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)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하여 진입도로·용수시설·정보통신시설 등 국내·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지임대) 군수는 국내·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국내·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.

제11조(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)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화순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 유치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화순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등) 군수는 화순군의 소재 공장의 화순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화순군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,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) ①군수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투자유치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화순군의 출연금
2. 기금운용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③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제14조(기금의 사용)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1. 투자기업의 용지대입비 및 시설비
2. 고용·교육훈련 보조금
3.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5조(보조금 지원) ①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50명이상 신규로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②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%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보조금의 지원은 기업당 교육훈련 보조금, 시설 보조금이 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6조(다른 조례등의 준용)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제17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②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·관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18조(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)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,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·세출결산서와 함께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현금 및 지출결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3. 기타 군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등

제19조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과 기금출납원을 두며, 기금운용관은 도시경제과장이 되고, 기금출납원은 투자진흥 담당이 된다.

제20조(전략산업에 대한 지원)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기금의 범위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)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

다고 인정되는 국내·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금의 범위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(투자기업의 사후관리) ① 국내·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·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.

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·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23조(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)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1.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·폐업한 경우
2. 허위, 기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
3.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
4.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5.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
6.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7. 지원받은 후 화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8. 지원사항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.

제24조(자본유치 실적보상) 군수는 국내·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·단체,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상한다.

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